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

2019. 1.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목 차

안정적 일자리 및 통관의 규제혁신 도모를 통한 경제의 활력 제고

①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p.1
② 중견·대기업에 대한 항공기 부분품 등 관세 면제 기한 연장	p.2
③ 보세판매장 내국물품 판매 및 입국장 면세점 도입	p.3
④ 면세점 특허갱신 제도개선	p.4
⑤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완화	p.5
⑥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취소 사유 합리화	p.6
⑦ 단일보세공장 특허 요건 확대	p.7
⑧ 보세공장 특허 범위 확대	p.8
⑨ 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처리절차 개선	p.9
⑩ 종합보세구역 장기 체화물품 매각 처리 허용	p.10
⑪ 종합보세구역 장외작업장 반출입절차 간소화	p.11
⑫ AEO 기업의 정기 자체평가 간소화	p.12
⑬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	p.13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수출입기업에 대한 자금부담 경감 지원

⑭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p.14
⑮ 수출용원재료 관세 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p.15
⑯ 환급금 총당사유 확대	p.16
⑰ 체납 증가산금률 인하	p.17
⑱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p.18
⑲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기계등 감면세 적용 연장 등	p.19
⑳ 납부불성실가산세율 등 인하	p.20
㉑ 관세 체납처분 유예 근거 마련	p.21
㉒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	p.22
㉓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기한 연장	p.23
㉔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기한 연장	p.24
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p.25
㉖ 나석(裸石)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	p.26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도모

27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범위 확대	p.27
28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	p.28
29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p.29
30 관세분야 지정·등록·특허 등의 취소사유 완화	p.30
31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p.31
32 물수품의 수탁판매기관 등 행정조사 근거 마련 및 요건 구체화	p.32
33 통고처분 금액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신설	p.33
34 전자지급수단 환전 허용 및 환전영업자 영업방식 다양화	p.34
35 국제서신으로 수입되는 수표 등의 사후신고 허용	p.35
36 해외 일방에 의한 수출입대금 상계 거래의 사후신고 허용	p.36
37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p.37
38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기준 완화	p.38
39 관세사 정보의 공개 의무화	p.39
40 관세사 연수교육 의무화	p.40
41 관세사 연수교육 위탁운영 허용	p.41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

42 종합보세사업장 업무정지 사유 변경 및 폐쇄규정 신설	p.42
43 면세점 특허수 결정 등 심의·결정 위원회 설치	p.43
44 지재권 침해 우편물 반송제한 및 폐기 등 관리강화	p.44
45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대상 범위 확대 및 명확화	p.45
46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조정	p.46
47 보세사 행정제재 추가 및 보세사징계위원회 법적 설치근거 신설	p.47
48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무역협정을 FTA특례법령에 반영	p.48

1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통관기획과, 042-481-78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관세감면 한도 설정 • 부분 복귀 : 2억원 • 완전 복귀 : 4억원	☐ 관세감면 한도 <u>폐지</u>
☐ 관세감면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 관세감면 대상 추가 • 중소기업, 중견기업, <u>대기업</u>

○ (기대효과) 국내복귀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 금액 및 대상 확대

○ (시행일) '19. 1. 1.(「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개정)

2 중견·대기업에 대한 항공기 부분품 등 관세 면제 기한 연장

(통관기획과, 042-481-7856)

종 전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해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예외)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1602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관세 감면

• (제1항) 중견·대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분품에 대한 적용기간별 관세 감면을

적용기간 및 감면율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 까지	2019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 까지	2020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 까지	2021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 까지	2022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 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제2항) 중견·대기업이 수입하는 반도체제조장비 제조·수리용 부분품에 대한 적용기간별 관세 감면을

적용기간 및 감면율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2019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달라지는 내용

□ (좌 동)

□ (예외)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89조제6항의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 감면 연장

• (제1호) 「WTO 협정 부속서 4의 민간 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적용기간별 관세 감면을

2019년 5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 까지	2022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 까지	2023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 까지	2024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 까지	2025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 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제2호) 제1호 이외의 물품에 대한 적용기간별 관세 감면을

2019년 5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2022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2023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2024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2025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50	100분의 40	100분의 20

○ (기대효과) 항공기업 중 중견·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지원으로 경제 활력 제고 및 신규 일자리 발생 기대

○ (시행일) '19. 1. 1.(「관세법」 제89조제6항 신설)

3 보세판매장 내국물품 판매 및 입국장 면세점 도입

(수출입물류과, 042-481-763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판매장에서 판매가능 물품은 외국물품에 한정 <u><신 설></u> • 시내·출국장 면세점만 운영 외국으로 물품 반출 또는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 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 판매	☐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물품은 <u>내·외국물품 구분없이 판매 가능</u> ☐ <u>입국장면세점 도입</u> •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 가능 •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물 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재부령 으로 지정 예정

○ (기대효과)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효과와 신규 일자리 발생 기대

○ (시행일) '19. 1. 1.(「관세법」 제196조 개정)

4 면세점 특허갱신 제도 개선

(수출입물류과, 042-481-763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면세점 특허 갱신 • 특허갱신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1회만 허용 (대기업은 갱신 불가)	☐ 면세점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특허 갱신 확대 • <u>중소·중견기업은 2회, 대기업은 1회</u> 특허를 허용 • <u>입국장 면세점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특허 부여</u>

○ (기대효과) 특허갱신 허용으로 면세점의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 (시행일) '19. 1. 1.(「관세법」 제176조의2 개정)

5 면세점 신규 특허요건 완화

(수출입물류과, 042-481-763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대기업 신규특허 요건 (① 및 ② 동시 충족) • ①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이용자수 50% 이상 • ②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전년대비) <u><신 설></u> ☐ 중소·중견기업 신규 특허요건 •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시 진입 허용	☐ 대기업 신규특허 요건 완화 (① 또는 ② 선택 충족) • ①지자체별 면세점 <u>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증가</u> (전년대비) • ②지자체별 <u>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u> (전년대비) •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진입 허용 ☐ 중소·중견기업 신규 특허요건 완화 • <u>모든 지역 상시 진입허용</u> 다만, 지역여건 고려,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가능

○ (기대효과) 면세점 사업의 진입장벽 완화

○ (시행일) '19년 상반기 예정(「관세법시행령」 제189조의2 신설)

6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취소 사유 합리화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특허보세구역의 취소사유* 해당 시 운영인의 다수의 특허 모두 취소 * 취소사유 • 부정하게 특허 받은 경우 • 명의를 대여한 경우 •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2년 이상 반입실적이 없어서 설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 특허보세구역 특허취소 사유 조정 • 특허보세구역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특정의 특허보세구역이 취소되더라도 다른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는 그대로 유지됨

○ (기대효과) 특허 취소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법적 안정성 제고

○ (시행일) '19. 1. 1.(「관세법」 제175조 단서 신설)

7 단일보세공장 특허 요건 확대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단일보세공장 특허 요건 ① 근접한 장소일 것 ② 동일기업일 것 ③ 물품관리체계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제조·가공의 공정상 일괄작업에 각 공장이 필요한 경우일 것	☐ 단일보세공장 특허 요건 확대 ①~③ (좌 동) ④ 제조·가공의 공정상 일괄작업에 각 공장이 필요한 경우일 것 OR <u>근접거리(15km)의 동일기업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일 것</u> ※ 기존 보세공장과 15km이내의 수개의 공장을 하나의 단일공장 으로 특허 가능

○ (기대효과) 단일보세공장의 특허요건 확대를 통하여 수출기업 물류지원 및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기여

○ (시행일) '18. 12. 24.(「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개정)

8 보세공장 특허 범위 확대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특허 대상 범위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가공·수리·조립·검사·포장 등의 작업	☐ 특허 대상 범위 확대 수출하는 물품의 작업 범위에 <u>분해</u> 작업을 포함

○ (기대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시행일) '18. 12. 24.(「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개정)

9 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처리절차 개선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공장 잉여물품은 수입 신고 전 반출 불가 •보세공장 잉여물품은 반출시 수입신고후 보세공장에서 반출 가능	☐ 보세공장 잉여물품은 <u>수입 신고 전에도 반출 가능</u> •먼저 즉시반출신고 후 반출하고 나중에 일괄수입*신고 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전 보세공장 잉여물품 즉시반출 신고절차 마련 * 법 제253조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제도를 활용하여 잉여물품 즉시 반출신고(10일 이내) *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에 따름

○ (기대효과) 잉여물품의 반출처리절차 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 (시행일) '19년 2월 예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8-56호)개정 이후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4항, 제27조제6항, 제33조제4항 적용)

10 종합보세구역 장기 체화물품 매각 처리 허용

(수출입물류과, 042-481-790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장기 장치물품의 매각 등 • 화주 부도 등에 따른 장기 보관화물 등은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매각 요청 가능 * ①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③ 화주의 주소·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⑤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 (기대효과) 장기 체화화물 처리절차 마련으로 종합보세구역 내 물류촉진

○ (시행일) '19. 1. 1.(「관세법」 제201조제5항 신설)

11 종합보세구역 장외작업장 반출입절차 간소화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장외작업장 제조가공 물품의 종합보세구역 재반입 의무 • 거대중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장외작업장소에서 수출입·반송신고 가능	□ 장외작업장 제조가공 물품의 종합보세구역 재반입 의무 <u>완화</u> • 장외작업장소에서 수출입·반송신고 또는 폐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보세구역 <u>재반입 의무 생략</u>

○ (기대효과) 장외작업장 제조·가공물품 등이 종합보세사업장에 재반입하지 않고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입신고 및 폐기신청 등이 가능토록 개선

○ (시행일) '19년 2월 예정(「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개정)

12 AEO 기업의 정기 자체평가 간소화

(심사정책과, 042-481-7860)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AEO 기업 자체평가 - 평가기준 數 : 총462개 - 증빙서류 : 모두 제출	☐ AEO 기업 <u>자체평가 간소화</u> <u>총121개</u> (74% 축소) <u>원칙적 미제출</u> (필요시만 제출)

○ (기대효과) AEO 기업의 사후관리비용 절감(39억여원/년)

○ (시행일) '19. 4. 1.(「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개정)

13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

(통관기획과, 042-481-773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일반물품의 수입통관 - 수출입신고 생략 가능한 물품 지정 - 휴대품·탁송품, 별송품, 우편물, 관세 면제물품,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u><신 설></u>	☐ 해외에서 수리된 선박 등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 (좌 동) - 수출입신고 생략대상에 「관세법」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대상이 되는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 추가 - 다만, ①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하는 운송수단, ②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운송수단, ③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은 신고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운송수단의 가격은 수리 또는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신고

○ (기대효과) 해외에서 수리된 운송수단이 수입신고 대상이라는 것과 이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가격 등 신고할 내용의 명확화

○ (시행일) '19. 1. 1.(「관세법」 제241조제2항제3호의2 「관세법」 제241조의2 신설)

14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세원심사과, 042-481-787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수입 후 국내판매 등 소유권이 이전(수입자→생산자·수출자)되는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만 국내거래증명서 발급	☐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생산자재를 제조시설을 가진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 <u>소유권이전이 없는</u>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국내거래증명서 발급

○ (기대효과) 소요량 산정 및 환급신청 업무의 효율성 도모

○ (시행일) '18. 12. 28(「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제56조 개정)

15 수출용원재료 관세 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세원심사과, 042-481-787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6개월의 범위내 일괄납부 가능 •(원칙) 담보제공 •(예외) 담보제공 생략 -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신용담보업체 (수출·환급실적 등 요건충족)	☐ (좌 동) •(원칙) <u>담보제공 생략</u> •(예외) <u>담보제공</u> - 관세법령 등 위반자, 체납자 등 * 관세법 제248조와 동일하게 규정 * 무담보 원칙, 예외적 담보 가능 (Negative 입법방식 전환)

○ (기대효과) 관세법상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무담보원칙을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에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 (시행일) '19. 7. 1.(「환급특례법」 제6조 개정)

16 환급금 총당사유 확대

(세원심사과, 042-481-787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환급금 총당사유 •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 잠정가격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 (충당 신청 필요) <u><신 설></u>	☐ 환급금 총당사유 <u>추가</u> • (좌 동) • (좌 동) • <u>과다 또는 잘못 환급된 금액</u> (충당 신청 필요)

○ (기대효과) 환급 추정금액과 추가 환급금 간 충당으로 일시적인 수출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 및 수출업체의 납부편의 제고

○ (시행일) '19. 1. 1.(「환급특례법」 제16조 개정)

17 체납 증가산금률 인하

(세원심사과, 042-481-787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체납 가산금률 •최초 체납시 3% •매 1개월마다 月 1.2%	☐ (좌 동) •(좌 동) •매 1개월마다 月 <u>0.75%</u>

○ (기대효과)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 (시행일) '19. 1. 1.(「관세법」 제41조, 「국세징수법」 제21조 개정)

18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지원요건 • '08.12.31.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18.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등록 ☐ 세제혜택 (개소세 과세대상인 승용차) •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한도 143만원*) *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 노후 경유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 요건 미충족*시 추정 •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예) ① 노후 경유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② 노후 경유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 ☐ 시행기간: '19.1.1. ~ '19.12.31. * '19.1.1. 이후 1년 이내 반출/수입된 차량을 신규 등록 * '19.1.1.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기 반출되어 재고로 있는 승용차)에 대해서도 환급 실시

○ (기대효과)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 (시행일) '19.1.1.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개정)

19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기계 등 감면세 적용 연장 등

(통관기획과, 042-481-78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감면대상 품목 68개	☐ 감면대상 품목 <u>49개</u> 로 조정 • 유압펌프 등 22개 품목 제외 • 습식분사기 등 3개 품목 신설
☐ 감면기간 및 감면율 • (중소기업) 2018년12월31일까지 수입하는 분으로 100분의 50 감면 • (중견기업) 2018년12월31일까지 수입하는 분으로 100분의 50 감면	☐ 감면기간 및 감면율 조정 • (중소기업) <u>2019년12월31일까지</u> 수입하는 분으로 100분의 50 감면 • (중견기업) <u>2019년12월31일까지</u> 수입하는 분으로 <u>100분의 30</u> 감면

○ (기대효과)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 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수입시 관세를 감면함으로써 해당 산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 (시행일) '19. 1. 1.(「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4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 개정)

20 납부불성실가산세율 등 인하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납부관련 가산세율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 가산세율 인하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u>0.025%</u>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액 × 3% + 미납기간 1일당 <u>0.025%</u>

○ (기대효과)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 (시행일)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개정)

21 관세 체납처분 유예 근거 마련

(세원심사과, 042-481-787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관세* 체납처분 유예제도 근거를 마련 *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포함 • (대상) 체납처분 유예로 사업을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 징수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내용) 담보*를 받고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 유예 * 다만, 세관장은 최근 3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 받고 그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면제 • (체납처분유예 취소) 분할납부 미이행 등의 경우 체납처분유예 취소* * 다만, 세관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처분유예 지속 ※ 체납처분유예 신청절차, 승인기간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

○ (기대효과) 관세 체납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통해 회생 기회 제공

○ (시행일) '19. 1. 1.(「관세법」 제43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40조 신설)

22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등 감면 •(감면한도) 대당 143만원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적용기한) '18.12.31.	☐ 감면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 <u>21.12.31.</u>

○ (기대효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 (시행일) '19. 1. 1.(「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3항 개정)

23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기한 연장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수입시 개별소비세 면제 • (적용기한) '18.12.31.	☐ 면제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2.31.

○ 《 기대효과 》 낙도지역 거주민의 기초생활 지원

○ 《 시행일 》 '19. 1. 1.(「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2호 개정)

24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기한 연장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수입시 간접세*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 (적용기한) '18.12.31.	□ 면제기한 차등 연장 ● (적용기한) -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 '21.12.31.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 '20.12.31.

○ (기대효과) 농어민 영농(營農)·영어(營漁)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이용 지원

○ (시행일) '19. 1. 1.(「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 개정)

2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적용기한) '18.12.31.까지 존치 - '19.1.1. 이후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u>21.12.31.</u>까지 존치 - '<u>22.1.1.</u> 이후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 (기대효과) 교통시설 · 환경개선 · 국가 균형발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 (시행일) '19. 1. 1.(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2조 · 제9조 개정)

26 나석(裸石)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나석 수입 시 개별소비세 과세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 나석 수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u>제외</u> ※ 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 (기대효과) 우리나라의 귀금속 제조산업 활성화

○ (시행일) '19. 1. 1.(「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개정)

27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범위 확대

(법인심사과, 042-481-76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심사제도 차등 운영 •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에 대해 심사 •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거래가격 및 적정성*여부만 심사 * 법 제30조①~③ 관련 사항 • 비특수관계자만 사전심사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신청	□ 특수관계 유무와 <u>상관없이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전반으로 심사 대상 확대</u> • (좌 동) •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사전심사 대상을 과세가격 결정방법 <u>전반으로 확대*</u> * 법 제30조~35조 관련 사항 • <u>특수관계 유무 관계없이 재심사 신청 가능</u>

○ (기대효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에 대해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을 제한없이 허용하여 성실 납세신고 지원

○ (시행일) '19. 1. 1.(「관세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관세법」 제3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28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

(세원심사과, 042-481-773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 • (사전심사) 시행령에서 정한 30일 이내에 결과 통지 • (재심사) 시행령에서 정한 30일 이내에 결과 통지 * 사전심사와 동일	☐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 • (좌 동) • (재심사) 시행령에서 정하는 <u>60일</u> 이내에 결과 통지

○ (기대효과)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처리기간의 현실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시행일) '19. 1. 1.(「관세법」 제86조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개정)

29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80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심사·심판청구 대상 <u><신 설></u> <u><신 설></u>	☐ 심사·심판청구 대상 확대 • <u>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을 받은 경우 추가</u> ☐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기한 추가 • <u>심사·심판 청구 하지 않은 경우</u> <u>: 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u> • <u>심사·심판 청구를 한 경우</u> <u>: 심사·심판 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u>

○ (기대효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및 권리구제 신속화

○ (시행일) '19. 1. 1.(「관세법」 제119조 및 제120조 개정)

30 관세분야 지정·등록·특허 등의 취소사유 완화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정보기획과, 042-481-776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구역 등의 지정·등록·특허 등 취소사유 ● 특정 결격사유 해당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 관련조항 세율불균형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 취소(\$89)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178) 종합보세사업장 폐쇄 명령(\$204)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224)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 취소(\$327의2)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 취소(\$327의3)	□ 지정·등록·특허 등 취소사유 완화 ● <u>특정 결격사유*</u> 임원을 3개월 이내 변경한 법인은 지정 등 취소 제외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받은 자

○ (기대효과) 일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으로 지정·등록·특허 등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

○ (시행일) '19. 1. 1.(「관세법」 제89조, 제178조, 제204조, 제224조, 제327조의2 및 제327조의3 개정)

31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국경감시과, 042-481-7936,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관련조항 개항(開港)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134) 외국무역선(기) 출항 허가(\$136) 입항절차 종료전 물품 하역·환적 허가(\$140) 항외 하역·환적 허가(\$142) 선(기)용품 등 하역·환적 허가(\$143) 보세구역외 보수작업 승인(\$158) 보세구역 장치물품 해체·절단작업 허가(\$159) 보세구역 등에 장치된 견본품 반출허가(\$161) 보세공장내 내국물품 작업 허가(\$185) 보세공장외 작업 허가(\$187)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허가(\$195)	□ <u>인허가 처리기한 및 간주규정 신설</u> ● 인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 처리기한 내 허가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미통보시 처리기간(처리기간이 (재)연장된 경우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

○ (기대효과) 관세행정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민원인 편의 제고

○ (시행일) '19. 1. 1.(「관세법」 제134조, 제136조, 제140조, 제142조, 제143조, 제158조, 제159조, 제161조, 제185조, 제187조 및 제195조 개정)

32 물수품의 수탁판매기관 등 행정조사 근거 마련 및 요건 구체화

(규제개혁담당관실, 042-481-780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관련조항 • 보세운송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222)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행정조사 근거 마련(§255의2) • 물수품 등 수탁판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근거 마련(§326)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327의2) •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327의3)	☐ 행정조사 행사 근거 마련 및 행사요건 구체화 • 조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 (기대효과)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사권 남용 방지

○ (시행일) '19. 1. 1.(「관세법」 제222조, 제255조의2, 제326조, 제327조의2, 327조의3 개정)

33 통고처분 금액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신설

(조사총괄과, 042-481-781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통고처분 금액 •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	☐ 통고처분 금액 납부방법 다양화 • 현금 이외에 <u>신용카드, 직불카드</u> 등으로도 납부 가능

○ (기대효과) 현행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던 통고처분 금액을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 제공

○ (시행일) '19. 7. 1.(「관세법」 제311조제5항 내지 제7항 신설)

34 전자지급수단 환전 허용 및 환전영업자 영업방식 다양화

(외환조사과, 042-481-793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전자지급수단-외국통화간 환전 불가 <u><신 설></u> ● 지급수단의 범위 :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환어음·약속어음·여행자카드·상품권·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u><신 설></u>	□ 전자지급수단-외국통화간 환전 가능 ● <u>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u> ● 지급수단의 범위 : (좌 동) <u>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u> □ <u>O2O 환전*과 무인환전을 접목한 새로운 환전서비스 허용</u> * O2O(Online to Offline) 환전 :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공항·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방식('18.5월 도입) (사례 1) O2O 환전업자가 신분증 스캔을 통해 인적사항이 확인된 고객에게 1,000불 한도내에서 무인환전기기로 외화 지급 가능 (사례 2) O2O 환전시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신청 접수 허용

○ (기대효과) 환전소비자의 편의성 증대, 환전영업자 경쟁력 강화

○ (시행일) '19. 1. 1.(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34호 개정, 제3-2조제10항 신설)

35 국제서신으로 수입되는 수표 등의 사후신고 허용

(외환조사과, 042-481-793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지급수단 수입은 반드시 사전 또는 수입될 때 신고	□ 지급수단의 수입사실을 <u>사전에</u>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사후 보고 ● 국제서신으로 수입되어 수입사실을 알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수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사후보고 허용

○ (기대효과) 수령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수입된 지급수단(외화수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처분, 형사입건 등 과도한 제재 감소

○ (시행일) '19. 1. 1.(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제1항 개정)

36 해외 일방에 의한 수출입대금 상계 거래의 사후신고 허용

(외환조사과, 042-481-793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상계는 반드시 사전 신고	□ <u>해외거래처 일방의 상계로 인한 경우, 사후 신고 허용</u> • 거주자가 수출입대금 수령시, 비거주자가 임의로 상계하여 그 잔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후 30일 내에 사후보고 가능

○ (기대효과) 국내기업의 자발적 의사와 관계없이 해외거래처의 일방적 결정으로 상계된 경우에 대한 과태료처분 등 제재 감소로 기업부담 경감

○ (시행일) '19. 1. 1.(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제2항 개정)

37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세원심사과, 042-481-764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조정관세 부과사유 •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69조제1호) • 국내에서 개발한 물품을 일정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69조제3호) • 농림축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69조제4호) •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9조제2호)	☐ 조정관세 부과사유 <u>확대</u> • (좌 동) • (좌 동) • (좌 동) • <u>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전, 유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 보장</u>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1순위 :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 3순위 : 할당관세, 계절관세 및 조정관세(제69조),	☐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u>조정</u> • 1순위 :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및 <u>제69조제2호</u> • 3순위 : 할당관세, 계절관세 및 <u>제69조제1호·제3호·제4호</u>

○ (기대효과) 국내 산업의 보호 및 국제평화 안전을 제고

○ (시행일) '19. 1. 1.(「관세법」 제50조 및 제69조 개정)

38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기준 완화

(통관기획과, 042-481-785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관세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결격 사유 해당여부 판단기준일 •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 (좌 동) • <u>최종 합격 발표일</u>
☐ 미성년자 시험응시 불가 •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경우 시험 응시 불가	☐ 미성년자 시험응시 <u>가능</u> •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경우 시험응시 가능 (다만, 자격증 교부는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보류) *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등은 종전대로 시험 응시 불가

○ (기대효과) 법적안정성 제고 및 국민의 권리 보호 확대

○ (시행일) '19. 1. 1.(「관세사법」 제6조제2항 신설)

39 관세사 정보의 공개 의무화

(통관기획과, 042-481-785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관세사회는 등록된 <u>관세사의 성명, 전문분야, 자격취득 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관세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u>

○ (기대효과) 관세사의 전문성 함양

개인등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 제공

○ (시행일) '19. 7. 1.(「관세사법」 제21조의4

「관세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신설)

40 관세사 연수교육 의무화

(통관기획과, 042-481-785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관세사 연수교육 법적근거 마련 • 관세사는 <u>연간 8시간 이상으로 관세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u> • (면제사유) 휴업 등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대효과)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도모

○ (시행일) '19. 7. 1.(「관세사법」 제13조의3 및 「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 신설)

41 관세사 연수교육 위탁운영 허용

(통관기획과, 042-481-785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연수교육 운영시 자체 관세연수원 외에 <u>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가능</u>

○ (기대효과)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및 관세사 연수교육의 질 향상 도모

○ (시행일) '19. 1. 1.(「관세사법」 제21조의2제3항 신설)

42 종합보세사업장 업무정지 사유 변경 및 폐쇄규정 신설

(수출입물류과, 042-481-790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종합보세사업장 기능수행 정지 사유 • <u>결격사유</u>, 반출입 물량 감소, 1년동안 외국물품 미반입, 설비유지 의무 위반 <신 설>	☐ (좌 동) • 반출입 물량 감소, 1년동안 외국 물품 미반입, 설비유지의무 위반 ☐ <u>종합보세사업장 폐쇄 사유</u>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결격사유* 해당, 명의대여 *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기대효과) 종합보세사업장 불법 운영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로 질서 확립

○ (시행일) '19. 1. 1.(「관세법」 제204조 개정)

43 면세점 특허수 결정 등의 심의·의결 위원회 설치

(수출입물류과, 042-481-763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면세점 특허 수 결정 등 보세관매장 제도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u>보세관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설치</u>(기획재정부) ● 보세관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으로 개정 예정 ('19년 상반기 중)

○ (기대효과) 보세관매장 제도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제도운영위원회 설치하여 보세관매장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시행일) '19. 1. 1.(「관세법」 제176조의4 신설)

44 지재권 침해 우편물 반송제한 및 폐기 등 관리 강화

(특수통관과, 042-481-783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지식재산권 침해 우편물품 적발시 • 단순 반송	☐ (좌 동) • <u>폐기하거나 지재권 침해부분을 제거한 후 반송</u>

○ (기대효과) 지재권 침해 우편물 적발시 통관관리의 강화를 통하여 우편물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

○ (시행일) '18. 11. 26.(「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및 제25조 개정)

45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대상 범위 확대 및 명확화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	☐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확대 ● <u>관세 양허 여부에 관계없이</u>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
☐ 원산지조사 대상자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원산지조사 대상자 명확화 ● (좌 동) (좌 동) <u>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u>

○ (기대효과)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시행일) '19. 1. 1.(「관세법」 제233조제3항 개정)

46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조정

(통관기획과, 042-481-785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9개 운영 • 비식용 대두유, 황기, 당귀, 냉동 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 황, 천궁, 사탕무당(설탕), 작약, 황금, 미꾸라지, 가리비, 돔, 냉동꽂치, 김치, 식용 천일염, 팔, 냉동꽃게, 쿡(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새꼬막, 에이치(H)형강 • 냉동고추, 뱀장어 • 냉동옥돔, 비식용 냉동기름치, 비식용 냉동멸치, 비식용 꽃가루 (화분)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u>35개</u> 운영 • (좌 동) • (재지정) 냉동고추, 뱀장어 • (삭 제)

○ (기대효과) 국내 유통 중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 (시행일) '19. 2. 1.(「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개정)

47 보세사 행정제재 추가 및 보세사징계위원회 법적 설치근거 신설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사 행정제재 • 자격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신 설>	☐ 보세사 행정제재 <u>추가</u> • 자격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u>견책</u>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보세사징계위원회 <u>설치</u> • 보세사가 관세법령을 위반한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 (기대효과)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행정제재를 지양하고 보세사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징계의결에 대한 공정성 제고

○ (시행일) '19년 상반기 예정(「관세법」 제165조제4항 개정

「관세법」 제165조의3 신설

「관세법시행령」 제185조의2 내지 5 신설)

48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무역협정을 FTA관세특례법령에 반영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u>한-중미 FTA 관련 규정 신설</u> •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신설 • 긴급관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조치 절차 신설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 서명일부터 1년 • 원산지조사결과 회신기간 - 조사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 • 원산지증명서 보완기간 - 45일 • 원산지 조사 방법 - 간접조사와 직접 서면·현지조사 •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 일시 수입 물품, 상용견품, 인쇄 광고물,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 물품

○ (기대효과)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무역협정 활용 조기 정착

* 코스타리카, 엘사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 (시행일) '19년 상반기 예정

(한-중미 FTA 발효 후 FTA관세특례법령에 개정예정)